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BK21 FOUR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사회학〉 교육연구팀 운영규정

2024.3.15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4단계 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4단계 BK21 운영 시행 세칙」,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본교의 여러 규정, 그리고 교육연구단의 4단계 BK21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한다.

#### 제3조 적용 및 범위

본 규정의 내용은 사업팀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이 상위 기간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교육연구팀 구성

#### 제4조 연구팀의 구성

연구팀의 참여인력은 연구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각 인원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및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5조 연구팀장·참여교수

① 연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사업의 총괄 수행
- 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라.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마.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참여교수는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동일한 학과 소속으로서 해당 학과의 전일제 근무의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한다.

③ 연구팀장 및 참여교수의 자격, 직위변경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지침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 참여대학원생

-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 전원으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4년, 석박사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의미한다.
- 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대학원생 지원)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의미한다.

## 제7조 신진연구인력·행정전담인력

- ① 연구팀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과 연구의 팔목할만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인력과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며, 채용기준 및 업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③ 행정전담인력은 연구팀 내부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운영지침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산학협력 전담인력과는 구분된다. 채용 기준 및 업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되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장 교육연구팀 운영

### 제8조 운영회의

- ① 운영회의는 연구팀장과 참여교수 전체로 구성되며, 매 학기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의 비정기 회의로 열린다.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학과 소속 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운영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연구팀 참여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 나. 사업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다. 운영규정 제정·개정·폐기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절차

- ① 선발 일정 및 선발 조건 등은 운영회의에서 정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춘 학과 내 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한다.
- ② 학기 단위 선발과 매 학기 첫 달에 시작되는 일정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회의를 통해 지원대학원생이 선발되며 선발 결과는 대상자들에게 통지된다.
- ③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지원하는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의 홈페이지 또는 선발 일정 관련 공지를 참고하여 지원서, 성적표,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선발된 참여대학원생들은 연구팀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선발 절차 이후 지원대학원생으로서의 자격 사항에 변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구팀에 알려야 한다.
- ⑤ 선발 절차 이후 변동사항에 관한 처리는 운영회의를 통해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기준

- ① 운영회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선발한

다.

- ② 선발기준으로는 연구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직전 학기까지의 연구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기타 상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의에서 선발 기준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가. 석사과정생

- 연구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 교육연구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생

나.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

- 국내외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한 대학원생을 우선으로 함
-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한 대학원생을 우선으로 함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 교육연구단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생

- ④ 선발된 참여대학원생들은 연구팀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선발 절차 이후 지원대학원생으로서의 자격 사항에 변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구팀에 알려야 한다.

가. 참여대학원생은 취업, 휴학, 자원퇴학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시점 이후의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

나.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장의 승인 하에 여타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연구팀에 제출하여 교육연구팀장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⑤ 운영회의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검토하되 고의성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 ① 참여대학원생은 기한 내 각종 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가 종료된 대학원생은 취업시 즉시 교육연구단에 보고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종료 이후에도 교육연구단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제12조 지원대학원생 연구결과물 제출

- ① 박사과정생의 경우 국제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연구결과물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석사과정생의 경우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다.
- ③ 박사과정생의 연구결과물에 한하여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 ①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은 연구팀에 요청할 경우, 운영회의를 거쳐 운영지침 및 이 운영규정 제33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제34조 (국제화경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학회 및 연수의 참여에 드는 비용과 학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선발 단위에 해당하는 기간인 6개월 동안 다음을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및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급액은 조정되거나 차등 적용될 수 있고,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가. 입학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또는 석사수료생: 월 100만원
  - 나. 입학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 6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60만원
  - 다. 입학 4년 이내의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 6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30만원
- ③ 참여대학원생은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연구 경쟁력 강화라는 4단계 BK21 사업의 취지에 맞춰 주40시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연구팀장과 참여교수, 그 외 학과소속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국내외 학술회의 및 국내외 주목받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 또는 게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④ ①~②에서 규정하는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은 참여 기간 동안 휴학이나 자퇴 등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거나 운영지침 및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된 지원액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예산 운용

- ①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크게 학회 등의 참가와 논문 게재로 구분된다.

가. 학회 등 참가: 학회 등 참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는 교통비·숙박비·일비·식비를 포함하는 여비와 학회 가입비 등 참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학회 등 참가비가 지원될 수 있다. 단, 국제학술회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에서 규정하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운영회의를 통해 해당 학회의 적실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나. 논문 게재: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영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논문 게재 비용과 해외 학술지의 경우 필요할 수 있는 번역 및 첨삭 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다.

- ② 학회 등 참가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은 학회 참여여부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팀장과 연구팀 행정전담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인솔을 목적으로 학회 등에 참가하는 참여교수 역시 요청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참가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학회 등 참가 비용은 학회 일정 시작 전까지 전액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술대회 참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서는 운영회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학회 등 참가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운영지침을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 운영지침 등 상위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팀장 혹은 연구회의를 통해 재량이 발휘될 수 있다.
- ⑤ 논문 게재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은 논문 게재 절차와 관련된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연구팀에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해외 학술지 게재를 위한 번역 및 첨삭도 포함되며, 기타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는 참가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구팀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 참여인력 성과급

①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간접비로 한다.

② 지원시기: 성과급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급 지급의 편의상 매 학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상자 선정: 성과급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④ 사용용도

가.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 시 중앙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만,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하는 성과급의 경우 참여교수의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지원조건

가.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원조건

- 저서 및 논문 등 연구성과가 뛰어난 경우
-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 활동 등을 활발히 한 경우
- 교육연구단 내 학생 교육 및 지도에 모범을 보인 경우
- 다만, 대학 보직 및 석박사 배출 인원 항목은 참여교수에 한한다.
-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한 경우
-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낸 경우
- 교육연구단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 지원조건

- 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 국내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우수한 저서를 간행한 경우
- 우수한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우수한 경우
- 교육연구단의 활동 참여 및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

다. 행정직원

- 교육연구단의 활동 참여 및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 (세부사항은 행정직원 성과급 평가표에 따름)

⑥ 지원절차

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급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해당 참여인력(참여 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나. 성과급에 관한 제출 서류는 별도의 교육연구단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기타**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참여대학원생 외의 참여인력에 관한 규정들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계획 및 집행을 포함한 모든 기타 사항들은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 중 운영지침의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는 연구팀장과 연구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2024.03.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